

부속서 8-나 영화 공동제작

제1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권한 있는 당국**이란 각 당사국에 의하여 이 부속서의 부록 8-나-1에 그러하게 지정된 당국을 말한다.
- 나. **공동제작자**란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는 하나 이상의 한국 또는 중국 국민, 또는 제5조(제3자와의 공동제작)와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제3국/지역의 국민을 말한다.
- 다. **공동제작영화**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승인된 사업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국민과 협력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하고, 제5조가 적용되는 영화를 포함한다. 공동제작영화가 이 부속서에 따라 승인되기 위하여 그 영화는 각 공동제작자의 연기적, 기술적, 기능적 및 재정적 기여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과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 라. **영화**란 애니메이션을 포함하여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의 연속물 또는 영상과 소리의 연속물을 말한다.
- 마. **국민**¹이란 다음을 말한다.:
 - 1) 중국의 경우,
 - 국적법에 정의된 바와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또는
 - 중화인민공화국 법인
 - 2) 한국의 경우,
 - 국적법에 정의된 바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 대한민국 법인

제2조 자국 영화로의 인정과 혜택의 부여

이 부속서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영화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미래에 시행될 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자국 영화에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완전히 받을 자격이 있다.

¹ 이 부속서의 목적상, 한국 또는 중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도 한국 또는 중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3조 사업 승인

1. 공동제작영화는 제작 착수 전에 양 당사국 각각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제작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공동제작영화는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한 예비 승인의 조건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3. 제작이 완료되는 경우, 공동제작자는 완성된 공동제작영화와 권한 있는 당국이 각각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다.
4. 예비 및 최종 승인을 결정할 때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영화에 대하여 부록 8-나-1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권한 있는 당국은 사업이 이 부속서의 규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한다.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예비 또는 최종 승인을 부여할지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자국의 정책과 지침을 적용한다.
6.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동제작영화에 “계획수립”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공동제작영화는 예비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동제작영화에 “영화 공공상영 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공동제작영화는 최종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7. 한국과 관련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 또는 최종 승인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공동제작영화는 그러한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4조 기여도

1. 영화의 각 공동제작자의 연기적, 기술적 및 기능적 기여 비율(이하 통칭하여 “창의적 기여도”라 한다)은 공동제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영화에 대한 최종 창의적 기여도의 2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여야 한다.
2. 영화의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 비율은 공동제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영화 최종 제작비용의 2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여야 한다. 재정적 기여도 산출에는 현물 기여가 포함될 수 있다.

제5조 제3자와의 공동제작

1. 한국 또는 중국이 제3자와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유지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제3자의 공동제작자와 공동으로 제작될 영화를 이 부속서에 따른 공동제작영화에 대한 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른 승인은 제3자의 공동제작자 기여도가 한국과 중국의 공동제작자의 개별 기여도 중 낮은 것보다 더 높지 아니한 제안으로 제한된다.

제6조 영화 제작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승인할 경우 이 규칙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공동제작영화에 포함되는 촬영분의 최소 90퍼센트는 그 영화를 위하여 특별히 촬영된다.

제7조 입국 편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과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제3자의 공동제작자인 국민이 공동제작영화의 제작 또는 홍보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 또는 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8조 장비 수입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세 및 무세금으로 공동제작영화 제작을 위한 기술 장비 및 촬영 자재의 일시적 반입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 영화 배급

1.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최종 승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관련 당국이 그 당사국에서 그 영화의 공공상영을 허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2. 양 당사국은 세계 시장에서 공동제작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세계 배급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 기술 협력

양 당사국은 영화와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및/또는 디지털 시네마 기술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포괄적인 기술협력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
부록의 지위**

부록 8-나-1은 이 부속서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12조
국제법에 따른 의무**

이 부속서의 규정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국제 협정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른 양 당사국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부속서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원용하지 아니한다. 주의가 요구되는 모든 사안은 양 당사국 간 상호 논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4조
종료**

양 당사국이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의 규정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나 이 부속서의 종료 시점에 완성되지 아니한 공동제작영화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적용되며 그러한 공동제작의 완료시까지 유효하다.

**제15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의 종료**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료된다.

부록 8-나-1
이행 약정

1. 이 부속서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한국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KOFIC)이고, 중국의 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전영국이다.

중국전영합작제편공사는 공동제작영화의 공동제작 지위를 사정하는 중국의 주관 기관으로 지정된다.

양 권한 있는 당국과 주관 기관은 이 부속서의 운영을 감독 및 검토하며 공동제작자 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중재한다.

2. 이 부속서는 한국과 중국 본토만의 공동제작자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적용된다.

3. 신청 절차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동제작자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제작 지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한다.

가. 작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소유 관련 서류 사본

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영화의 줄거리 및 영화의 완성 대본

다. 해당국 또는 해당 지역의 각 국민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 목록. 이 목록은 그들의 국적과 작품 경력, 그리고 배우의 경우에는 그들의 국적과 그들이 연기할 역할의 유형 및 분량을 포함한 역할을 나타낸다.

라. 스튜디오 및 야외 촬영에 관한 주요 촬영 기간 및 장소를 명시한 주간별 작업계획

마. 투자자의 약정서와 상세한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예산안

바. 공동제작자가 영화의 소유권을 공동 소유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해외시장 수익을 포함하여 영화의 이용에서 비롯되는 수익의 분배율을 규정하는 제작자 간 작성된 공동제작 계약서,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 및 추가 정보